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0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송기헌·문대림·박균택

박정하 • 백승아 • 윤건영

윤준병 · 정성호 · 정준호

정춘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 방지시책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실 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시책의 수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수립된 종합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취방지시책 수립 시 종합시책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개선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확 인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라. 악취실태조사·악취정밀조사와 악취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에 관한 보고·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벌칙을 마련함(안 제24조의2 및 제28조제5호 신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할구역"을 "제1항의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를 "하며,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악취정밀조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거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정밀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정밀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악취정밀조사에 필요한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개 선명령의 이행 상태나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악취실태조사·제4조의2의 악취정밀조사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조사를 위탁받거나 대행하기로 한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변경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토지의 소유자 등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등의 제거·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할수 없다.
-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소유자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2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에의 출입·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등의 제거·변경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적용례)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까지 해당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 | | |
| 민의 책무) ① (생 략) | 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 |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 ②제1항의 악 | | |
|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 | 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관 | | |
| 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 | 할구역 | | |
| 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 | | | |
| 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 | | |
|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 | | |
|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
| |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 4 | | |
|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 | <u>5</u> | | |
| <u>0년</u>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u>한</u> | <u>년하며,</u> | | |
| <u>다</u> . |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 | | |
| |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 | |
| | <u>다</u> . | | |
| <u><신 설></u>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 | | |
| | 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 | | |
| | <u>여야 한다.</u> | | |
| <u><신 설></u> | 제4조의2(악취정밀조사) ① 환경 | | |
| | <u>부장관,</u> 시·도지사, 대도시의 | | |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거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 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정밀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 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악취정밀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 그 밖에 악취정밀조사에 필 요한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 (5) (생 략)

⑥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 다. 이하 같다) · 군수 ·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 하여 시 · 도지사에게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제10조(개선명령) ①・② (생 제10조(개선명령) ①・② (현행과 략)

<신 설>

| 제6소(약취판리시역의 | 시성) | |
|--------------------|-----|--|
| ~ ⑤ (현행과 같음) | | |
| ⑥ <u>시장·군수·구</u> 청 | 성장 | |
| | | |
| | | |
| | | |
| | | |
| | | |

⑦ ~ ⑨ (현행과 같음)

같음)

③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개 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의 장은 지체 없이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나 조치 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 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4조의 악취실 태조사·제4조의2의 악취정밀 조사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 계 공무원 또는 행정청으로부 터 조사를 위탁받거나 대행하 기로 한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 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 시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 라 한다)을 제거·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28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1. ~ 4. (생 략) <신 설>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 의 소유자등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 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토지 에의 출입・일시 사용 또는 장 애물등의 제거 · 변경을 방해하 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소유자등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에의 출입・일시 사용 또 는 장애물등의 제거 • 변경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